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 2. 29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의 관련 조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으로 함.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관계부처 승인 :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생략
- 마. 신규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